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 10. 20.
행정문화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0월 5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10년 10월 11일

3. 상 정 및 의 결 일 자

제29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10. 10. 14.)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윤영현)

1. 제안이유

- 도내에 대추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대추연구소를 설립함에 원활한 사업추진과 연구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 연구소 신축 및 시험포 예정지를 보은군 지역의 도유지와 군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확보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대추연구소 신축 및 시험포 부지 교환 》

○ 사업기간 : 2010. 10. ~ 2010. 12

○ 취득(보은군유지)

- 위치 :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95-9번지 등 8필지

- 면적 : 21,589m²

- 재산가액 : 518,617천원

○ 처분(충북도유지)

- 위치 : 보은군 탄부면 임한리 32번지 등 7필지

- 면적 : 22,649m²

- 재산가액 : 520,927천원

III.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장용대)

본 건은 대추연구소 설립에 따라 보은군 산외면 95-9번지 등 8필지의 보은군유지와 보은군 탄부면 임한리 32번지 등 7필지의 충북도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 요지 : “생략”

VI. 심사 결과 : 원안의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등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제 43 호
----------	--------

제출연월일 : 2010년 10월 5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도내에 대추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대추연구소를 설립함에 원활한 사업추진과 연구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 연구소 신축 및 시험포 예정지를 보은군 지역의 도유지와 군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확보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 2차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대추연구소 신축 및 시험포 부지 교환 》

- 사업기간 : 2010. 10. ~ 2010. 12
- 취득(보은군유지)
 - 위치 :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95-9번지 등 8필지
 - 면적 : 21,589㎡ ※ 세부내역 별첨
 - 재산가액 : 518,617천원
- 처분(충북도유지)
 - 위치 : 보은군 탄부면 임한리 32번지 등 7필지
 - 면적 : 22,649㎡ ※ 세부내역 별첨
 - 재산가액 : 520,927천원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1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8건	21,589.0	518,617	2010	대추연구소 신축 및 시험포 부지		
	건물							
	기타							
1	토지	8건	21,589.0	518,617	2010	대추연구소 신축 및 시험포 부지	보은군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10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7-3)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처 분 시 기	처 분 사 유	처분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7건	22,649.0	520,927	2010	대추연구소 설립 부지 교환		
	건물							
	기타							
1	토지	7건	22,649.0	520,927	2010	대추연구소 설립 부지 교환	충청북도	
	건물							
	기타							
2	토지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대추연구소 신축 및 시험포 부지 교환 재산목록

□ 취득재산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취득시기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 량			
총계		8필지	21,589	518,617		
1	답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95-9	4,317	112,242	10.12월	보은군
2	답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95-10	2,028	52,728	"	"
3	답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95-11	2,726	62,698	"	"
4	임야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95-12	2,643	44,931	"	"
5	답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95-13	2,169	49,887	"	"
6	답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95-14	1,573	40,898	"	"
7	구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95-15	845	17,745	"	"
8	전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95-16	5,288	137,488	"	"

□ 처분재산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처분시기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 량			
총계		8필지	22,649	520,927		
1	답	보은군 탄부면 임한리 32	2,230	51,290	10.12월	충청북도
2	답	보은군 탄부면 임한리 32-1	3,041	69,943	"	"
3	답	보은군 탄부면 임한리 32-2	2,445	56,235	"	"
4	답	보은군 탄부면 임한리 35-1	3,035	69,805	"	"
5	답	보은군 탄부면 임한리 35-2	4,429	101,867	"	"
6	답	보은군 탄부면 임한리 36	4,447	102,281	"	"
7	답	보은군 탄부면 임한리 36-1	3,022	69,506	"	"

관계법령발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 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 (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